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4. 2. 27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2월 8일

나. 발 의 자: 최봉희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2월 2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24. 2. 26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최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(연합대)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○ 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○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3조)

○ 자율방범대(연합대) 활동과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
○ 자율방범대(연합대)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-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제정. 2022.4.26.) 및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 - 안 제2조(정의)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“자율방범대” 및 “자율방범연합대”의 용어를 규정함.
 - 안 제5조(방법활동 경비 지원)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제5조제2항에서 지도·점검 결과를 참고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함.
 - 안 제8조(경비 지원중단) 및 안 제9조(지도 및 점검)는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경우와 교부한 지원금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규정을 마련하고, 안 제10조(포상)에서 공로자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함.
- 검토 결과
 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(제정. 2016. 7.1.)는 제정 당시 “자율방범대” 구성에 대한 상위법이 존재하지 않아 「자원봉사활동기본법」 제3조제3호 및 제7조제7호 규정으로 말미암아 “자원봉사활동”에 “자율방범대”를 포함하고, 동법 제4조에 따라 “자율방범대”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음.
 - 그동안 상위법 없이 조례로 운영해 오던 “자율방범대”가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(제정. 2022.4.26.) 및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법률적 지원 근거를 갖추게 되었으며, 이에 따라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,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
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바탕으로 전부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당위성이 인정된다고 보임.

 - 다만,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자율방범대의 업무 및 인력에 관한 사항은 경찰서, 행정적 지원 사항은 관할 구(區)로 관리주체가 이원화됨에 따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임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(최봉희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92
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2. .

발 의 자: 최봉희, 신흥식, 우경란

이성수 의원(4인)

1. 제안이유

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(연합대)의 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가. 자치법규명 변경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

나.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3조)

다. 자율방범대(연합대) 활동과 필요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

(안 제4조~제5조)

라. 자율방범대(연합대)의 포상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
3. 개정안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2. 9. ~ 2. 14.)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자율방범대” (이하 “방범대” 라 한다)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「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2. “자율방범연합대” (이하 “연합대” 라 한다)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(이하 “방범대 등”이라 한다)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.

제4조(자율방범활동)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(이하 “방범활동”이라 한다)을 한다.

1.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 활동
2.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
3. 영등포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4.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

제5조(방범활동 경비 지원) ① 구청장은 방범대 등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등
2.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·보수비
3. 방범초소·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(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) 및 운영비
4.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·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
5.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
6. 대원의 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

7. 그 밖에 방법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,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,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도·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.

제6조(관리·기록 등) 경비 지원금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, 방법대 등은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7조(중복지원의 금지) 구청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방법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5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8조(경비 지원중단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.

1. 3개월 이상 방법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2.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
3.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
4.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

제9조(지도 및 점검)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경비 지원금 사용 현황을 정기·수시로 행정지도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영등포경찰서장에게 예산 사용 현황을 지도·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영등포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.

제10조(포상)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범대 등 또는 대원에게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.

제11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